

지적사항 1

감사결과 처분요구서

[부서·기관명]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소 ◎◎지소

[행정상 조치] 주의

[재정상 조치] -

[신분상 조치] 문책 1명

[제 목] 시설비 집행잔액 사용 부적정

[지 적 사 항]

○ 「지방재정법」 제47조에는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,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 II.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에는 자치단체장은 사업비 낙찰차액 발생 시 불요·불급한 다른 사업으로 활용을 억제하여야 하며, 연말 예산 집행 시 시급하지 않는 사업비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III. 비목별 세부집행지침에는 시설비 낙찰 차액으로 신규 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○ 그런데도 축산진흥연구소 ◎◎지소에서는 2015년 08 도장·도색공사 집행 잔액으로 축산진흥연구소 ◎◎지소 소관 업무가 아닌 ◎◎지소 08에 대한 LED등 교체, 바닥제 교체, 스텐캐노피 설치 등 공사비로 6,700천원의 시설비를 집행하였고, 2014년 아스콘 포장공사 집행잔액으로 08 후문 보수 및 캐노피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등 2013. ~ 2015. 3년간 8건, 37,947천원을 예산에서 정산 목적외의 공사로 시설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다.

[처 분 요 구]

○ 앞으로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예산에서 정한 목적외의 용도로 집행할 경우에는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여 주시고,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지도·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지적사항 2

감사결과 처분요구서

[부서·기관명]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소 □□지소

[행정상 조치] 주의

[재정상 조치] -

[신분상 조치] 문책 1명

[제 목] 생물안전(3등급) 검사시설 옥상방수 추가공사 부적정

[지 적 사 항]

- 「지방재정법」 제3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, 제47조에는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, 2015. 8. 25. 축산진흥연구소 □□지소와 (주)✉✉✉✉와 체결한 생물안전 3등급(BL3) 검사시설 신규 설치공사 내역서에는 동 건축물 옥상에 대한 방수공사(콘크리트 액체방수 공법)가 포함되어 있다.
- 그런데도, 축산진흥연구소 □□지소에서는 BL3 검사시설 신축공사에 옥상 방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누수 등으로 인한 하자 발생 시에 동 건축물 신축 공사 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공사를 요구할 수 있어 별도로 공사를 발주할 필요가 없음에도 별도로 옥상방수공사를 발주함으로써 10,400천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다.

[처 분 요 구]

-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지도·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지적사항 3

감사결과 처분요구서

[부서·기관명]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소 ※※※※과 외 3

[행정상 조치] 주의

[재정상 조치] -

[신분상 조치] 문책 3명

[제 목] 수수료 등 세외수입 납입관리 부적정

[지적사항]

- 「경상남도 재무회계 규칙」 제76조 제5항에 의하면 세입·세출외현금 출납원은 도 명의의 보통예금계좌(가상계좌 포함)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입·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 받을 수 있다. 다만, 납입금은 세입·세출외현금계좌로 즉시 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, 제3항에서는 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 세입·세출외현금출납부를 정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- 그런데, 축산진흥연구소 ※※※※과, ④④, ⑤⑤, ⑥⑥지소에서는 도축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수납을 위한 세외수입 납입을 관리하면서 규정과는 다르게 세입·세출외현금 보통계좌가 아닌 별도의 세입통장을 개설하여 계좌이체로 납입받아 관리하였고, ※※※※과의 경우 2013.3.5~2016. 6월 현재까지 859건 661,474천원, ④④지소에서는 730건 125,428천원, ⑤⑤지소 126건 173,214천원, ⑥⑥지소 1,111건 930,537천원을 지출품의 및 지출결의서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협은행 출금전표에 지출원의 관인과 사인(私印)만으로 지출하였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수납등록 및 세입·세출외현금출납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지 않는 등 세입·세출외현금 출납절차에 의하지 않고 세외수입을 조치함으로써 회계부정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통제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수수료 세입 관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.

[처분요구]

- 「경상남도 재무회계 규칙」 규정에 맞게 출납원지정, 지출결의 과정 및 별도의 현금출납부를 작성하여 주시고, 앞으로 관련 절차없이 세입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지도·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지적사항 4

감사결과 처분요구서

[부서·기관명]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소 ☺☺과 외 1

[행정상 조치] 시정

[재정상 조치] -

[신분상 조치] 문책 2명

[제 목] 정수물품 취득 및 관리 소홀

[지 적 사 항]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58조제3항에 따르면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구입 및 유지·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.
- 그런데도, 축산진흥연구소 ☺☺지소에서는 정수관리 대상물품으로 책정된 물품에 대해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정수물품 대체취득 승인요청 및 정수 배정승인 절차를 거쳐 물품을 구입해야 함에도, 이를 이행하지 않고 2012.6.8. 정수물품인 분광광도계(1대)를 임의로 취득한 사실이 있고 2016.6.17. 현재까지도 정수배정을 승인 없이 관리하고 있으며, 또한, 축산진흥연구소 ☺☺과에서는 2011.6.30 경상남도로부터 관리전환 받은 친환경 구제역폐사가축 처리장비(차량 일제형)의 경우 경상남도 ☺☺과에서 2011.7.8. 정수배정 승인을 받았으나 물품관리시스템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아 정수물품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, ☺☺지소에서는 2013.2.19. 취득한 미니버스의 경우 정수배정 승인을 통보받아 2013.2.20. 구입하였으나 물품 관리시스템에 등재되지 않는 등 정수관리대상 물품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

[처 분 요 구]

-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정수배정 신청 및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정수물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,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지도·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